배재대학교 학칙

[제정 1986.7.3., 일부개정 2021.4.28.]

제1장 총칙

- 제1조(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학문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능동적인 자아발전과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이끌 수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 제2조(전공 설치 및 입학 정원) ① 본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하며, 각 대학의 학부(과),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은 별지 1과 같이 하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00.3.1., 2001.3.1., 2001.9.1., 2002.9.1., 2005.2.17., 2005.7.6., 2007.1.16., 2009.1.29., 2009.7.21., 2010.10.20., 2011.5.31., 2012.8.17., 2013.5.15., 2014.4.10., 2015.3.25., 2016.4.15., 2017.12.18., 2018.11.26., 2019.5.29.>
 - ②~⑥ 삭제 <2009.1.29.>
 - ⑦ 본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8.>
 - ⑧ 제7항에 따른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선발 및 입학, 학생정원, 수업료 및 설치 운영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8.>

제2장 삭제 <2009.1.29.>

제3조 삭제 <2009.1.29.>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목개정 2005.2.17.>

- 제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단,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수업연한은 5년(10학기)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5.2.17., 2005.8.8., 2007.1.16., 2011.8.30., 2012.8.17., 2020.1.16.>
 - ② 전 항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1년(2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2005.2.17., 2007.1.16., 2011.8.30., 2020.1.16.>
 - ③ 제4조 제2항의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16.>
- **제4조의2(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1.>
 - ②~⑤ 삭제 <2019.2.21.>

[본조신설 2005.2.17.]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를 제 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 단,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매 학기수업개시일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14.2.4., 2019.6.28.> 1.~2. 삭제 <2014.2.4.>
 -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2.17., 2006.2.16.>
 -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전공·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20.>

- 제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계절학기의 수업일수는 15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되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9.1., 2005.8.8., 2019.2.21.>
 -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정으로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9.11.25.>
 - ④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집중수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8.20.>

제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개정 2005.8.8.. 2006.2.16.>
- 2. 개교기념일
- 3. 일요일
- 4. 국정 공휴일
- ②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 ③ 휴업 중에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실험,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7.1.16., 2012.8.17.>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부(과) 및 등록

- 제8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외국대학으로부터의 전입학의 시기는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9조(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1.8.30.>
-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개정 2011.8.30.. 2013.5.8.>
- 3. 삭제 <2011.8.30.>
- **제9조의2(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개정 1998.7.1., 2016.1.29.>
 -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개정 1998.7.1., 2016.1.29.>
 -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9.>
 - ④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6.1.29.>
 - 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9.>
- 제9조의3(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한다.
- **제10조(편입학)** 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및 학부(과)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9.1., 2006.2.16.>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또는 학부(과)의 진급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단,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0.3.1., 2006.2. 16.>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1., 2006.2.16.>
- **제10조의2(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8.7.1., 2006.2.16., 2007.1.16., 2016.1.29.>
 - ② 삭제 <2016.1.29.>
 - ③ 재입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I)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 **제11조(입학지원서류)**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2016.1.29.>
 - 1. 소정의 입학 원 및 전형료
 - 2. 기타 필요한 서류
 - 3. 기타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화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 2015.1.8.>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8., 2016.9.9.>
 -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제13조(보증자) 삭제 <2018.10.1.>
- 제14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 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06.2.16.>
 - ②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1., 2006.2.16.>
- **제15조(전부(과))** ① 학부(과)를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학부(과)장 및 대학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3.1., 2006.2.16.>
 - ② 전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1., 2006.2.16.>
 - ③ 삭제 <2006.2.16.>
 - ④ 삭제 <1999.3.1.>

제6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목개정 2007.1.16.>

- 제16조(휴학) ① 일반 휴학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6.>
 - ② 학기 중 각 호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질병, 상해, 임신, 출산: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 2.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양육: 주민등록표등본
 - 3. 본인 창업: 창업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 4. 국가재난 또는 감염증 등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신설 2020.11.11.〉

[전항개정 2018.11.26.]

- ③ 휴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I)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 제16조의2(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합산하여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학생은 3년(6학기)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2012.8.17., 2019.6.28.>
 -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16조 제2항에 의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0., 개정 2018.11.26.>

[본조신설 2007.1.16.]

- 제17조(입대휴학) ①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 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16.>
 - ② 제1항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학칙 제16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7.1.16., 2008.9.10.>
- 제18조(복학)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 ② 복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I)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제1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

-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2.16., 2018.10.1., 2020.8.20.>
- 제20조(제절)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개정 2010.8.31.>
 -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5.1.8.>
 - 4. 삭제 <2019.2.21.>
 -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06.2.16.>

제7장 교육과정과 학위수여 <제목개정 2007.1.16.>

제1절 교육과정

- **제21조(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교직 과정으로 구분하며, 교과목 필수와 필수선택, 선택, 자유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2.17., 2006.2.16., 2009.1.29.>
 - ② 교양교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29.>
 - ③ 삭제 <2006.2.16.>
 - ④ 각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별도의 교육과정편람에 의한다. <개정 2000.3.1., 2006.2.16.>
 - ⑤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학사제도연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2.16.>
- 제21조의2(연계교육과정) ①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

- 제21조의3(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학생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6.]

제21조의4(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5.>

[본조신설 2008.1.31.]

제21조의5 삭제 <2010.10.20.>

- 제21조의6(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한다.
 - ② 학·석사연계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7.]

- 제21조의7(트랙제 교육과정) ①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트랙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9.]

제22조(이수단위)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

상의 강의(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 등 포함)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3.1., 2011.12.26., 2013.5.15.>

② 단, 예체능계열, 인증 및 평가를 위한 교과목은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제2절 시험과 성적

제23조(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서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필기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제25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0.3.1.>

제26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0.9.1.>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0	C0	2.00
A0	4.00	D+	1.50
B+	3.50	D0	1.00
В0	3.00	Р	불계
C+	2.50	F	0.00

제27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가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개시 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추가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절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제목개정 2007.1.16.>

제28조(이수학점) ① 이수학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I)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3.1., 2005.8.8., 2006.6.14., 2009.1.29., 2011.8.30., 2012.8.17.>

- ② 계절학기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7학기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9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는 8학점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2008.9.10.>
- ③ 장기현장실습(IPP)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9.9.>
- ④ LINC+장기현장실습 및 교과목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8.>
- 제29조(다전공) ① 학생은 재학 중 전공 또는 학부(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2, 3전공으로 인정하며, 그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1., 2011.12.26., 2013.5.15.>
 - 1. "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개정 2013.5.15.>
 - 2."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 전공이 참여하여 각 학과, 전공에서 개설 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는 전공 <개정 2013.5.15., 2014.2.4.>
 - 3. "융합전공": 기존 학과, 전공 개설교과목 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전공으로 신설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공 <신설 2011.12.26., 개정 2013.5.15., 2014.2.4.>
 - 4."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전공 <개정 2011.12.26., 2013.5.15.>
 - ② 다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1., 2011.12.26., 2013.5.15.>
 - ③ 삭제 <2014.2.4.>

제29조의2(부전공) ① 재학 중 전공이외의 특정전공의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5.2.17., 2011.12.26., 2015.1.8.>
-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0조(학점인정) ① 제26조에 규정한 학업성적 등급 중 D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P는 합격으로 한다.
 - ② 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2004.1.1., 2005.8.8.>
 - ③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정기준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0조의2(능력별학점인정) ① 교양과목 중 특정교과목은 이를 수강하지 아니하여도 학점취득특별시험에 의하여 학기 당 최대취득학점 외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점취득특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수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학점취득특별시험의 방법,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
- 제31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제32조(편입 및 전부(과)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00.3.1., 2008.9.10.>
 - ② 전부(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전부(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이수과목은 교양 또는 자유선택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개정 2000.3.1., 2008.9.10., 2015.1.8.>
 - ③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본 대학교 1~2학년 전공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연계교육과정의 전공과목은 필히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교과목은 입학 후 이수할수 있다. <신설 2003.3.1., 2015.1.8.>

- 제32조의2(외부학점인정)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 온라인에 의한 원격강좌 또는 군 휴학 중 군 교육·훈련과정 등에서 취득한 학점중 졸업이수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대학의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1998.7.1., 2001.3.1., 2002.3.1., 2003.3.1., 2006.6.14., 2007.1.16., 2009.1.29., 2011.12.26.>
 - ② 총장의 승인을 얻은 국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체험학습, 봉사활동 성격의 교과목이나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1.3.1., 2002.3.1., 2003.3.1., 2011.8.30.>
 - ③ 국내·외의 교환학생, 학점 교류학생,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연수생, 학점 인정기관의 교류학생,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기관(가상대학)의 수강 학생, 군교육·훈련과정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7.1., 2001.3.1., 2009.1.29., 2011.12.26.>
 - ④ 삭제 <2009.1.29.>
 - ⑤ 입학 전 국내·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제32조의3 삭제 <2007.1.16.>

제33조(수료학점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 2005.2.17., 2007.1.16., 2009.1.29., 2011.8.30., 2014.1.10.>

1.

졸업최소 인정학점 수료학년	130학점	132학점	140학점	142학점	5년제 건축학 전공
1학년	33학점	34학점	35학점	36학점	33학점
2학년	66학점	67학점	71학점	72학점	65학점
3학년	99학점	100학점	105학점	107학점	97학점
4학년	130학점	132학점	140학점	142학점	129학점
5학년		_		_	160학점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제4절 졸업 및 학위수여 <제목개정 2007.1.16.>

- 제34조(졸업 이수학점 및 시기)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교양 교과 목과 전공 교과목, 교직 교과목, 자유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학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 2005.2.17., 2007.1.16., 2008.1.31., 2009.1.29., 2014.1.10.>
 - 1.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140학점 이상 <개정 2009.1.29., 2011.1.28., 2011. 8.30., 2014.1.10., 2020.1.16.>
 - 2.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 160학점 이상 <개정 2010.10.20., 2011.8.30., 2014.1.10., 2020.1.16.>
 - 3. 삭제 <2011.8.30.>
 - 4. 삭제 <2014.1.10.>
 - ② 삭제 <2007.1.16.>
 - ③ 졸업 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하되 후기졸업 대상은 조기졸업자, 8학기 (건축학 전공은 10학기)이상을 등록하고 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

춘 자로 한다. <개정 2005.2.17.>

- 제35조(졸업자격) ① 학칙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부여한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의 심사 과정을 거쳐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2.17., 2007.1.16., 2008.1.31., 2011.8.30.>
 - 1.~7. 삭제 <2005.2.17.>
 - ②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단, 이공계열 학부(과) 중 총장이 따로 정한 학과는 3급)이상을 통과한 자에 한해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11.8.30., 개정 2015.1.8.>
- 제36조(졸업인정) ① 학칙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에 의해 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게는 학부(과)별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5.2.17., 2007.1.16., 2008.1.31., 2015.1.8.>
 -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3의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단, 다전공 또는 부전 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동일한 학위증서 번호로 제1전공 및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병기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0.9.1., 2005.2.17., 2007.1.16., 2008.9.10., 2011.1.28., 2011.12.26., 2012.2.2., 2013.5.15., 2014.4.10., 2015.3.25., 2020.8.20., 2021.2.4.>
 - ③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부여한 졸업 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를 이수하지 못한 자,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단, 이공계열 학부(과) 중 총장이 따로 정한 학과는 3급)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수료증만 수여한다. 단,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때 수료 시점의 해당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 수여 시기는 졸업가격 제출학기 졸업일로 한다. <개정 2004.1.1., 2005.2.17., 2006.2.16., 2007.1.16., 2012.8.17., 2015.1.8., 2016.9.9.>
 - ④ 삭제 <2008.9.10.>
 - ⑤ 삭제 <2010.10.20.>

- ⑥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본교 와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 제36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자격을 거쳐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2회 범위내에서 학기 단위로 유예할 수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9., 2018.7.3., 2019.2.21.> [본조신설 2011.8.30.]
- 제36조의3(명예졸업) ① 본교에 입학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명예졸업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경우
 - 2. 본교의 명예를 높였거나 발전에 공헌한 경우
 - 3. 기타 총장이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③ 명예졸업자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정한다.
 - ④ 명예졸업증서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명예졸업자 명부는 별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9.2.21.]

제37조(학위취소) 졸업생으로 학칙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개정 2008.9.10.>

제8장 포상과 징계

제3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

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 제40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견진 술 및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2006.2.16., 2008.9.10.>
 - 1. 본교의 교육이념을 위배하거나 학칙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08.9.10.>
 - 2. 고의적인 수업방해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행위 <개정 2008.9.10.>
 - 3. 기타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학생 본분에 위반되는 행위 <개정 2006.2.16.>
 - ② 징계의 종류는 퇴학, 정학(무기정학 및 유기정학)과 근신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08.9.10.>
 - ③ 징계처분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단, 근신은 단과대학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행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 ④ 학생은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9.10.>
- 제40조의2(위원회) 제38조의 포상과 제40조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 회와 단과대학 학생징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10.]

제9장 등록금 <제목개정 2000.3.1.>

- **제41조(등록금의 납부)**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00.3.1., 2005.2.17.>
- 제42조(등록금의 종류)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3.1.>
- 제42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

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 **제43조(등록금의 감면)**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1.>
- **제44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1., 2007.1.16.>
 - ②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I)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제10장 장학금

- 제45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시간제등록 학생, 장애학생 <제목개정 2003.11.1.>
- 제46조(위탁생) ①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삭제
- 제47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및 교포학생이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 ② 제1항의 학생으로서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력을 검정하여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6.>

- 제47조의2(시간제등록 학생) ① 제9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소정의 선발과 정을 거쳐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시간제등록 학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시간제등록 학생의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 기타 전형방법으로 선발하되 예·체능계열은 실기를 평가할수 있다. <개정 2010.2.2., 2011.8.30.>
 - ④ 시간제등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8.7.1.>
- 제47조의3(장애학생) ① 장애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육 및 학습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장애학생이 교육 및 학습활동 등 대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 ③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본 대학교 학칙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장애학생의 선발 및 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1.1.>
- 제48조(학칙준용) 위탁생, 외국인 학생, 시간제등록 학생, 장애학생에게는 별도 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8.7.1., 2003.11.1.>

제12장 공개강좌 및 학점은행제 <제목개정 2007.1.16.> 제49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 또는 기술

- 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에서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조(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와 전공이 유사하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30학점 이상, 전공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중에서 84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되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제51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51조의2(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대학교에 학교법인 배재학당 정관 94조의 2에 의거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며, 목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10.]

- 제51조의3(학교기업) ① 본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배재대학교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두 며,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지 3과 같다. <개정 2011.1.28.>
 -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30학점, 1개 학기당 15학점 이내로 인정 할 수 있다.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에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04.6.30.>

- 제51조의4(중앙도서관)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학도서관으로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둔다. <신설 2016.3.30.>
 - ②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며, 도서관위원회의 장은 총장으로 한다. <신설 2016.3.30.>
 -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3.30.>

제14장 교수회

- 제52조(교수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 제53조(구성 및 소집) ① 교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5., 2008.9.10., 2012.8.17.>
 - ② 전체 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③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제54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회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9.10.>
 -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입학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4. 대학평의원회의 교원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4.5.>
 - 5.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제15장 학생활동

- 제55조(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신장하여 대학문화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6.>
 -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26.>
 -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개정 2020.3.26.>

[제목개정 2020.3.26.]

- 제55조의2(간부자격 기준) 자치기구 간부(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등)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개정 2020.3.26.>
 -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 2. 후보 등록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학기의 평점평균이 C+(평점 2.50)이상인 자 <개정 2020.3.26.>
 - 3. 4~6학기에 재학중인 자
 - 4. 유기정학 이상 학사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5.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와 그 형의 집행 유예를 받지 아니한 자)
- **제56조(회비)** 본교 재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 제57조(조직의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6.>
- 제58조(학생지도)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59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수업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 제60조(학생활동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1조(간행물의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장 교무위원회

- 제62조(설치 및 구성)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부총장, 대학원장, 각 대학장, 교목실장, 각 처장, 대덕밸리캠퍼스장, 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교수협의회장, 노동조합지부장, 대학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1999.9.1., 2000.3.1., 2001.7.16., 2002.9.1., 2003.6.1., 2004.11.19., 2006.2.16., 2009.7.21., 2011.8.30., 2011.12.26., 2012.8.17., 2014.2.4., 2015.1.8., 2016.3.30., 2017.12.18., 2018.10.1., 2018.11.26., 2019.3.1., 2020.5.13., 2020.6.11.>
- 제63조(의장)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4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 대학원,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0.3.1.>
 -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장 교원 <장신설 2005.2.17.>

- **제65조(전임교원의 책임학점 등)**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학칙시 행세칙(I)에 따른다. <개정 2011.12.26., 2013.1.7.>
 - ② 기타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12.26.>

[본조신설 2005.2.17.]

제65조의2(강사)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교'강사인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6.28.]

제18장 학칙개정 <장신설 2005.2.17>

- 제66조(학칙개정) ① 학칙 개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는 학칙개정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단, 학칙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6.>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학칙개정을 입안한 부서의 장은 이를 사전에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6.2.16., 2007.1.16.>
 - 1. 학칙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③ 기획처장은 예고를 하지 아니한 학칙개정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입안부서에 대하여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06.2.16.>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예고를 하는 부서의 장은 개정안의 취지, 주 요내용 또는 전문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6.>

- ⑤ 입안부서는 예고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개정안을 확정하고. 예고기간 만료 후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6.>
- ⑥ 기획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학칙개정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6.. 2008.9.10.>
- ⑦ 규정심의위원회는 회부된 학칙개정안을 심의하여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 <신설 2006.2.16.>
- ⑧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칙변경안은 대학평의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6., 2009.11.25., 2013.1.7., 2014.1.10.>
- ⑨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된 학칙변경안은 총장이 확정·공고한다. <신설 2014.1.10.>

제19장 보칙 <장신설 2005.2.17.>

제67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장 대학평의원회 <장신설 2007.4.5.>

- 제69조(대학평의원회 설치) ① 배재학당 정관 제146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개정 2020.11.11.>
 -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장 자체평가 <장신설 2009.11.25.>

제70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1986년7월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변경 학칙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가정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과하고 40명씩으로 한다.
- 3. 제26조의 학업성적 분류표시는 198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P"는 1987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변경 학칙은 198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조, 제8조, 제10조, 제34조, 제36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학칙을 적용한다.
- 3. 제4조 ①항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이 변경 학칙은 198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본 학칙 제40조,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되(별표1)의 변경사항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사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사경고는 제20조 제3 호의 제적 대상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3.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위 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및 제34조 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일 현재 2부대학 전산통계학과 재적학생은 산업대학 전자계산학과(야)에, 2부대학 교회음악과 재적학생은 문과대학 음 악학과(야)에, 2부대학 의상학과 재적학생은 산업대학 의상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현재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재적학생은 졸업시 까지계속 재적케 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

으로 본다.

- ② 1996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휴학 또는 제적 전 재적했던 학과가 동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학과 통폐합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998학년도까지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변경 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 미술교육과 재적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재적케 한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금융보험학과와 해외선교학과 및 산업미술학과 재적생은 각각 경영학과와 신학과 및 미술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후 존속하는 기존학과는 변경된 학과(부) 또는 전공이 소속된 단과대학에 편입한다.
- ⑥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1998학년도 이전 졸업생에 대한 수여학위 종별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① '93년 3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존속했던 사범대학이 '95년10월 4일에 인문대학으로 조직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3, '94, '95학년도에 사범대학으로 입학한 자는 당시 소속됐던 사범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 미술교육과, 미술학부, 음악교육과, 음악학과는 예·체능대학에 편입한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자치행정학과 재적생은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1997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학생은 휴학 또는 제적 전 재적했던 학과가 동 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폐합 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999학년도까지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변경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존속했던 '96, '97학번인 외국어학부, 화학 및 생명과학부 및 '97학번인 수물학부는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 '96, '97학년도에 입학한 건설공학부 소속인 자원 환경공학 및 건축공학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토목건축공학부 소속 토목환경공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95학년도에 입학한 자원환경공학과 재적생도 변경된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이후 각 학과(부) 및 전공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 및 각 단과대학에 편입한다.
 - ④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영상예술학과 재적생은 학과 명칭이 변경된 공연영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1.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2조의 대학에 두는 학부(과)의 정원 중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하여 소속 대학 및 학부(과)에 편입토록 하였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학당시 학과로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 3. 제10조의 편입학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1998년 6월30일까지 귀국한 자는 1998학년도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영양급식경영학과 재적생은 관광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영미학부, 세계지역학부, 예체능대학 재적생은 각각 영어영문학부와 러시아·일본·중국학부, 예술대학에 재적하

- 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의류학부는 관광경영대학에 편입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 제②항은 2001학년도 입학(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① 2000학년도부터 인문학부 야간과 러시아·일본·중국학부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3학년도 1학기 까지 야간강좌를 개설하고 2004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2000학년도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 입학생들은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1999학년도 경상학부 및 2000학년도 경영정보학부 입학자가 경제학 및 경제정보학전공을 선택 시 전자상거래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2001학년도 음악학부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4학년도 1학기까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5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관광경영대학의 관광경영학부 입학생은 관광문화대학의 관광경영학부에, 의류학부 입학생들은 관광문화대학 의류패션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경과조치) ① 2002학년도부터 통합·조정된 관광경영학부와 영어영문학부의

전공은 관광경영학부의 경우 2001학년도 입학생까지, 영어영문학부의 경우 2000학년도 입학생까지 소급 적용하되, 전공최고학점 등 졸업자격요건은 입학년도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2005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관광경영학부와 의류패션학부의 복학생 및 재입학생과 2004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영어영문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의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은 통합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편제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새로 개편된 학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경영정보학부는 경영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되, 경영학 및 국제통상학 전공은 경영학부의 같은 전공에, 전자상거래학 전공은 전자상거래학부의 전자상거래학 전공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경영정보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중국학전공은 중국학부에, 일본학전공은 일본학과에 러시아학전공은 러시아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러시아·일본·중국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의 복학생(재입학생)은 재학하는 학년의 편제에 따를 수 있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유전공학전공 및 종전의 생물학전공, 생화학전 공, 환경녹지학전공, 철학전공, 응용수학전공, 물리학전공자가 복학(재입학) 시 재학하는 학년의 편제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법학부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7학년도 1학기까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8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2004학년도 IT공학부 야간의 컴퓨터공학 전공이 폐지됨에 따라 2007학년도 1학기 까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8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IT공학부 야간의 컴퓨터공학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의 동일 전공 또는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국어국문학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에, 심리철학전 공은 심리철학과에, 신학전공은 복지신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인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외교학과에, 사회학전공은 사회학과에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사회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화학전공은 화학과에, 전산정보수학전공은 전산정보수학과에, 전산전자물리학전공은 전산전자물리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자연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⑥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생물의약학 전공은 생물의약학과에, 유전공학 (유전체정보공학)전공은 유전공학과에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생명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⑦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세라믹공학 전공은 세라믹공학과에, 고분자재

료공학 전공은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신소재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⑧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토목환경공학전공은 토목환경공학과에, 건축학 및실내건축학 전공은 건축학부 각각의 전공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토목건축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의 2, 제33조, 제34조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영어영문학부 야간, 행정학과 야간, 의류패션학부 야간, IT공학부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학기까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화학과 및 세부전공이 칠예인 미술학부의 복학생(재입생)은 각각 분자과학부 및 칠예과의 재학하는 학년의 편제에 따를수 있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독어독문학 전공은 독일어문화학과에, 불어불문학 전공은 프랑스어문화학과에, 스페인어문학 전공은 스페인어·중남미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유럽어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경영학 전공은 경영학과에 국제통상학 전공은 무역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 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하며 전자상거래학 전공은 전자상거래학 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사회학 전공은 미디어정보·사회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주간과 야간의 법학전공은 각각 법과대학 법학과 및 법과대학 법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⑦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관광·이벤트경영학 전공은 관광·이벤트경영학 과에, 호텔·컨벤션경영학 전공은 호텔·컨벤션경영학과에, 외식·급식경영학 전공은 외식·급식경영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관광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⑧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연극영상학을 전공하는 자는 복학(재입)시 연극 영화학을 전공하는 학년의 편제에 따를 수 있다.
- 3. (관련규정의 폐지) 이 변경 학칙의 시행일로부터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규정, 사회봉사교과목 운영규정, 계절학기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③항의 학부 (과)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 ①항은 2005 학년도 입학자부터, 제34조 및 제65조는 2006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 주간 의류패션학부는 의류패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2. (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경영학과 야간, 무역학과 야간, 관광·이벤트경영학과 야간,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9학년도 1학기 강좌를 개설하고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로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자연과학대학은 과학기술바이오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유전공학과는 생명유전공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생명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컴퓨터공학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에, 정보통신

공학 전공은 정보통신공학과에, 전자공학 전공은 전자공학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IT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세라믹공학과는 정보전자소재공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신소재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⑥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토목환경공학과는 건설환경·철도공학과에, 전 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토목건축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⑦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향장화학 전공은 화장품학 전공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분자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⑧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원예조경학부은 생명환경디자인학부에, 원예학 전공은 도시원예학 전공에, 환경조경학 전공은 조경디자인학 전공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생명환경디자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③항 '별지1'의 2007학년도 입학정원표 및 입학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야간학부(과) 모집단위 폐지로 인한 재입학 허가 경과조치) 야간학부(과)의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최초 모집 단위로 재입학할 수 없는 자는 야간학부 (과)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단, 2007학년도 입학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

적용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한다.

- 2. (입학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7학년도 특수법무학과의 모집단위 가 법학과와 통합됨에 따라 2006학년도 이전 특수법무학과에 입학한 자는 통합된 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은 영어영문학과에, 영어영문학부 TESOL전공은 TESOL영어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영어영 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 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외식·급식경영학과는 외식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연계열로 모집한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전산정보수학과는 전산수학콘텐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전산전자물리학과는 과학기술학부 전산전자물리학 전공에 광·전기공학과는 과학기술학부 광·전기공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이 변경 학칙의 시행일로부터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 학사에 관한 시행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⑥항 '별지1'의 2008학년도 입학정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 2. [야간학부(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 학부(과)의 제적생이 재입학 할 경우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과) 전공의 주간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과)로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②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 학부(과)의 졸업예정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과) 전공의 주간으로 학적

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6항 '별지1'의 2009학년도 입학정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2008학년도 신설된 아펜젤러국제학부의 전공은 국제비즈니스학과 동아시아학으로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2학년, 2011학년도 3학년, 2012학년도 4학년 편입생부터 한다. <개정 2010.2.2.>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전산수학콘텐츠학과의 재적생은 전산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0학년도 입학정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법학과, 미술학부 입학생은 학적변동 (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13년 8월까지) 해당 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법학과, 미술학부 입학생 중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법학부, 미술학부,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 ② 2009학년도 이전에"법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법학부(법학전공, 공무원법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보며, 분리된 전공 중에서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 할 수 있다.
 - ③ 2009학년도 이전에"미술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미술학부"또는"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보며, 분리된 학부(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2.>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 항 '별지1'의 2011학년도 입학정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2학년도 입학정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 2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 제2항은 2011학년도 후기 외국인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아펜젤러국제학부 및 칠예과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학생 중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2012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휴학 또는 제적 전 재적했던 학부(과)가 동 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모집단위가 통합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정치외교학과, 과학기술학부, 생명유전공학과, 생명환경디자인학부 도시원예학 전공, 조경디자인학 전공, 음악학부, 미

술학부,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영상예술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정치· 언론학과, 물리융합전기공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원예조경학부 원예학 전공, 조경학 전공, 음악학과, 미술조형디자인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사 진영상애니메이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인문대학, 외국학대학은 하워드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경영대학, 사회대학, 법과대학은 서재필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과학기술바이오대학, 공과대학은 아펜젤러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⑦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관광경영대학, 예술대학은 김소월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⑧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인문대학 가정교육과, 예술대학 비주얼아트디 자인학과는 아펜젤러대학에,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김소월대학에 편입한다.
- ⑨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예술대학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학 전공은 주 시경대학 문화예술콘텐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과학기술학부 전산전자물리학전공, 광전기공학전공의 입학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2015년 8월까지) 해당 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물리융합전기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의 전임 강사 폐지는 2012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3학년도 입학정원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2011년 8월 31일부 변경학칙의 부칙 2조 제③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술학부, 정치외교학과의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2013년 8월)까지 미술학부, 정치외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3년 3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미술조형디자인학과, 정치·언론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음악학과 재적생은 음악학부 클래식음악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자연계열 실버보건학과 재적생은 인문계열 실버보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의 재적생은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독일어문화학과, 프랑스어문화학과의 2013학년도이전의 입학생은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18년 8월까지) 변경 전 학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19년 2월이후 졸업자는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심리철학과, TESOL영어과,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정치·언론학과, 전산수학과, 정보전자소재공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 단위인 심리철학상담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정치언론안보학과, 컴퓨터수학과, 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중국학부 (중국어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법학부(법학전공, 공무원법학전공),

분자과학부 (화장품학전공, 응용화학전공), 물리융합전기공학과, 미디어정보· 사회학과,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 미술조형디자인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는 소속 재적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17년 8 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8년 2월 이후 졸업 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한국어문학과, 중국학과, 공무원법학과, 제약공학과, 전기공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미술디자인학부(비주얼디자인전공), 미술 디자인학부(회화전공), 연극영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공공행정학과의 2011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은 졸업하는 연도(2015년 8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공공정책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음악학부의 실용음악전공 재적생은 실용음악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⑥ 2014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음악학부 클래식음악 전공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학적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 ⑦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아펜젤러대학 가정교육과 및 주시경대학 실버보건 학과는 하워드대학에, 서재필대학 미디어정보·사회학과와 아펜젤러대학 비주얼 아트디자인학과, 주시경대학 문화예술콘텐츠학과는 김소월대학에 편입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제34조(졸업 이수학점 및 시기) 제1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2013년 10월 7일부 변경학칙의 부칙 2조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정보사회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미디어콘텐츠학과, 연극영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스포츠마케팅학(연

계전공) 학위수여명 변경은 2015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5년도 입학정원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관광·이벤트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미술디자인학부(회화전공, 비주얼디자인전공)는 소속 재적생이 학적 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18년 8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9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관광·호텔·이벤트·컨벤션경영학부. 미술디자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관광·호텔·이벤트·컨벤션경영학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사진영상디자인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글로 벌관광호텔학부, 기업컨설팅학과, 광고사진영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별 지1'의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2014학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독일어문화학과, 프랑스

- 어문화학과 소속 학생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추가 개설 없이 각각의 전공으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김소월대학의 글로벌관광호텔학부, 미술디자인학부의 전공은 글로벌관광호텔학, 미술디자인학으로 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영어영문학과, 러시아학과, 여가서비스경영학과는 소속 재학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2021년 8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2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영어영문·러시아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 전공,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심리철학상담학과, 무역학과, 원예조경학부 원예학 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심리상담학과, 무역물류학과, 원예산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정치언론안보학과,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제약공학과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18학년도부터 정치언론안보학과는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전공,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와 제약공학과는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전공과 제약공학 전공으로 모집단위를 변경한다. <개정 2019.2.21.>
 - ④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공공정책학과의 2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아펜젤러대학 자연과학계열 원예조경학부 조경학전공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본다. 단, 2022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부(과)의 승인을받아 김소월대학 공학계열 조경학과에 재적할 수 있다. <개정 2019.2.21.>⑥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글로벌관광호텔학부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2년 2월 이후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2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관광이벤트 컨벤션학과 또는 호텔여가서비스학과에 재적할 수 있다. <개정 2019.2.21.> ⑦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하워드대학 글로벌언어비즈니스계열 항공운항과 는 김소월대학 관광계열에 편입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각 대학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 및 제36조 제 2항의'별지3' 의 졸업 학부(과)별 수여학위 종류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전 공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2019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 뮤니케이션 전공의 2018학년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2.21.>
 - ③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관광이벤트경영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 단위인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2019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연극영화학과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2.21.>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5조의2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하워드대학, 서재필대학, 아펜젤러 대학, 김소월대학 재적생은 2020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제에 따라 인문 사회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AI·SW창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6.>
 - ② 2020학년도부터 모집하는 실버보건학과는 자연계열로 한다.
 -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한국어문학과와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와 호텔레저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미술디자인학부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아트앤웹툰학과에 재적할 수 있다.
 -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영문·러시아학부,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에 재적 할수 있다.
 - ⑥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공무원법학과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법학과에 재적할 수 있다. ⑦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 전공과 경찰소방 전공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9학년도에 입학한 공공인재학부 재적생들은 정부·공기업 전공 또는 경찰소방 전공을 선택하여 계속 재적 하는 것으로 보며, 휴학 등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 전공 배정을 하지 아니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경찰법학과 또는 행정학과로 재적 할 수 있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

-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공기업 전공은 행정 학과에 경찰소방 전공은 경찰법학과에 재적 할 수 있다.
- ⑧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생물의약학과와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바이오의약학부에 재적 할 수 있다.
- ⑨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드론·로봇공학과와 건설환경·철도공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전공과 제약공학 전공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9학년도에 입학한 정밀응용과학부 재적생들은 나노고 분자재료공학 또는 제약공학 전공을 선택하여 계속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밀응용과학부에 재적 할 수 있다.
-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전기공학과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AI·전기공학과에 재적 할 수 있다. ② 2020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컴퓨터수학과의 2019학년도 이전입학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AI·전기공학과에 재적 할 수 있다.
- ③ 2020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변경되는 기업컨설팅학과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무역물류학과에 재적 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지 3) 졸업 학부(과)별 수여학위 종류에서 폐지되는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1'의 각대학 학부(과),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학년도 학제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및 별지3 졸업학부(과) 별 수여학위 종류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①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복지신학과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5년 2월 이후 졸업자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기독교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할 수 있다.
- ②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가정교육과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생명공학과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경영대학 외식경영학과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자연과학대학 외식조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정밀응용과학부,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5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신소재·화장품공학부에 재적할 수 있다.

- ⑥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게임공학과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 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5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지능SW공학부 정보통신학전공, 지능SW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지능SW공학부 정보보안학전공, 지능SW공학부 게임공학전공에 재적할 수 있다.
- ⑦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실용음악과와 피아노과 소속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해당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학생들도 변경된 융합전공 명칭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1"의 각대학 학부(과),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각 대학 학부(과),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 <개정 2009.1.29., 2009.7.21., 2010.10.20., 2011.5.31., 2012.8.17., 2013.5.15., 2014.4.10., 2015.3.25., 2016.4.15., 2017.12.18., 2018.11.26., 2019.5.29., 2020.1.16., 2020.3.26., 2021.4.28.>

	1	2022ই	•	
단대	계열		학부(과) 및 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	기독교사회복지학과	35	
	인문사회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	35	
	인문사회	중국통상학과	40	
	인문사회	일본학과	36	
인문사회대학	인문사회	영어과	40	
	인문사회	스페인어·중남미학과	35	
	인문사회	경찰법학과	60	
	인문사회	행정학과		60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40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35
	인문사회	경영학과		90
	인문사회	무역물류경영학과		40
경영대학	인문사회	e-비즈니스학과		35
73 73 대역	인문사회	관광경영학과		40
	인문사회	호텔항공경영학과		40
	인문사회	항공서비스학과		55
	자연과학	의생명과학과		40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40	
생명보건대학	자연과학	원예산림학과	40	
경망보신네띡	자연과학	간호학과	70	
	자연과학	실버보건학과	41	
	자연과학	외식조리학과	60	
	공학	전자공학과	40	
	공학	전기공학과		40
			컴퓨터공학	80
AI·SW창의융합대			인터넷소프트웨어학	50
ALOW 8 - 18 됩니	공학	AI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안학	60
٦			게임공학	60
			모바일소프트웨어학	50
	공학	드론·철도·건설시스템	90	
	공학	신소재공학과	35	
	공학	건축학과【5년제】		36
	공학	실내건축학과	40	
	공학	조경학과		35
	예·체능	아트앤웹툰학부	아트앤웹툰 (60) 게임애니메이션 (30)	90
문화예술대학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35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40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46	
	예·체능	공연예술학과	55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47	
	예·체능	뷰티케어학과	30	
	인문사회	부동산자산관리학과		17
아펜젤러	인문사회	복지상담학과	17	
미래대학	공학	GIS·드론학과	16	
	예체능	뉴미디어크리에이터	16	

2022학년도					
단대 계열 학부(과) 및 전공 입학					
주시경교양대학					
합계	7대학 2학부 39학과(46전공)				

		2021학년	도	
단과대학	계열	힉	부(과) 및 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	기독교사회복지학과		30
	인문사회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35
	인문사회	중국학과		64
	인문사회	일본학과		36
인문사회대학	인문사회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u></u>	90
	인문사회	경찰법학과		60
	인문사회	행정학과		60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36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35
	인문사회	경영학과		90
	인문사회	무역물류학과		65
경영대학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40
70 0 91 9	인문사회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60
	인문사회	호텔레저경영학과		63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49
	자연과학	바이오의약학부		65
	자연과학	바이오헬스케어융합학부	식품영양학 (25)	55
	사한유학		헬스케어생명공학 (30)	0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	원예산림학과	40	
	자연과학	간호학과		65
	자연과학	실버보건학과		41
	자연과학	외식조리학과		60
	공학	전자공학과		53
	공학	AI·전기공학과	1	50
			정보통신공학	70
AT CTU크)이 이동나이동)	공학	지능SW공학부	컴퓨터공학	86
AI·SW창의융합대학	9 ,		정보보안학	60
			게임공학	55
	공학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	과	90
	공학	신소재·화장품공학부		75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 【5년제】(30) 실내건축학 (30)	60
	공학	조경학과		27
	예·체능	아트앤웹툰학과	61	
문화예술대학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31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40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46
	예·체능	고성세스하브	실용음악	33
	예·체능	공연예술학부	클래식피아노	25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47
주시경교양대학				
합계		6대학 7학부 2	7학과(40전공)	2,048

		2020학년도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및 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	복지신학과	24
	인문사회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38
	인문사회	중국학과	67
	인문사회	일본학과	37
신교기원인정	인문사회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90
인문사회대학	인문사회	경찰법학과	60
	인문사회	행정학과	60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38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35
	자연과학	가정교육과	21
	인문사회	경영학과	106
	인문사회	무역물류학과	65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43
경영대학	인문사회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65
	인문사회	호텔레저경영학과	65
	자연과학	외식경영학과	61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50
	자연과학	바이오의약학부	65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27
기 서 기 체 제 체	자연과학	원예산림학과	40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	정밀응용과학부	54
	자연과학	간호학과	65
	자연과학	실버보건학과	41
	공학	전자공학과	55
	공학	AI·전기공학과	50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60
AT CTU코LA) O 중나미국).	공학	컴퓨터공학과	70
AI·SW창의융합대학	공학	사이버보안학과	50
	공학	게임공학과	42
	공학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90
	공학	신소재공학과	31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 【5년제】(36) 실내건축학 (29)	65
	공학	조경학과	29
	예·체능	아트앤웹툰학과	62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31
문화예술대학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40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50
	예·체능	실용음악과	34
	예·체능	피아노과	25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47
주시경교양대학	*		
합계		6대학/4학부 36학과(41전공)	2,048

			2019학년도		
Ę	 가대학	계열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40
		이미기회	어지어무 기가시청.법	영어영문학	37
	=======================================	인문사회	영어영문·러시아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	24
	글로벌언어 비즈니스 계열	인문사회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	29
	비-기- 계린	인문사회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중남미학	24
하워드		인문사회	중국학과	중국학	69
대학		인문사회	일본학과	일본학	37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학	35
	복지·힐링 계열	인문사회	복지신학과	복지신학	24
		인문사회	실버보건학과	실버보건학	37
	- 0 -1161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35
	교육 계열	자연과학	가정교육과	가정교육	21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106
		인문사회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	40
	경영 계열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	43
서재필		인문사회	기업컨설팅학과	기업컨설팅학	26
대학		인문사회	행정학과	행정학	34
				정부·공기업 (27)	01
	사회 계열	인문사회	공공인재학부	경찰소방 (26)	53
		인문사회	공무원법학과	공무원법학	50
		자연과학	생물의약학과	생물의약학	31
		자연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	33
	바이오 계열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29
		자연과학	원예산림학과	원예산림학	39
		공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66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56
		공학	게임공학과	게임공학	38
		공학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	47
아펜젤러 대학	IT융복합 계열	공약 공학	전자공학과	자이머모안약 전자공학	52
대학	11 중국업 세월	공학 공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27
				트론·로봇공학	
		공학	드론·로봇공학과		36
		자연과학	컴퓨터수학과	컴퓨터수학	22
		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	41
	나 고원 에서	공학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31
	나노공학 계열	자연과학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24)	54
	11 =1 =1 =1 =1 =1 =1 =1	-1 +1 -1 -1		제약공학 (30)	2=
	보건의료 계열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	65
		인문사회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	75
	관광 계열	인문사회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	67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항공운항	42
		자연과학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	61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	44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미디어콘텐츠학	37
김소월 대학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광고사진영상학	28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	56
	문화창조융합 계열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 【5년제】(33) 실내건축학 (27)	60
		공학	조경학과	조경학	26
		예·체능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62
		예·체능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34
		예·체능	피아노과	피아노	25
주시경 교양대학				•	
합계	5단과대학 5학부, 42학과(51전공)				2,048

(별지 2) 삭제 <2014.2.4.>

(별지3) 졸업 학부(과)별 수여학위 종류 <개정 2009.1.20., 2009.11.25., 2010.2.2., 2010.10.20., 2011.1.28., 2012.2.2., 2012.8.17., 2013.5.15., 2014.2.4., 2014.4.10., 2015.1.8., 2015.3.25., 2016.9.9., 2017.12.18., 2018.7.3., 2018.11.26., 2019.2.21., 2019.5.29., 2020.1.16., 2020.5.13., 2020.8.20., 2021.2.4.>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및 전공		학위명
	인문사회	기독교사회복지학	과	문학사
	인문사회	국어국문한국어교	육학과	문학사
	인문사회	중국학과		경영학사
	인문사회	일본학과		문학사
인문사회대학	인문사회	글로벌외국어자율	전공학부	문학사
	인문사회	경찰법학과		경찰법학사
	인문사회	행정학과		행정학사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문학사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교육학사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사
	인문사회	무역물류학과		경영학사
TI AJ -J) 즉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사
경영대학	인문사회	관광축제리조트경	영학과	경영학사
	인문사회	호텔레저경영학과		경영학사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항공경영학사
	자연과학	바이오의약학부		이학사
	자연과학	바이오헬스케어융합	식품영양학	이학사
	사연파악	학부	헬스케어생명공학	이학사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	원예산림학과		이학사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자연과학	실버보건학과		이학사
	자연과학	외식조리학과		이학사
	공학	전자공학과		공학사
	공학	AI·전기공학과		공학사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AI·SW창의융합대학	공학	지능SW공학부	컴퓨터공학	공학사
и о то д и т	0 1	705110 77	정보보안학	공학사
			게임공학	공학사
	공학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사
	공학	신소재·화장품공호	부	공학사
nsi.it nsi	7 P	al 축 최 P	건축학	건축학사
문화예술대학	공학	건축학부	실내건축학	공학사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및 전공		학위명
	공학	조경학과		공학사
	예·체능	아트앤웹툰학과		미술학사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예술학사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미디어학사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이학사
	예·체능	그시 기사라니	실용음악	음악학사
	예·체능	공연예술학부	클래식피아노	음악학사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체육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스포츠마케팅학		경영학사
		스페인·중남미통/	강학	경영학사
		중국통상학		경영학사
연계전공		영유아보육학		문학사
선계신증		상담복지학		문학사
		노인스포츠지도학		노인스포츠지도학사
		유아스포츠지도학		유아스포츠지도학사
		공항관리학		항공경영학사
		기능성화장품/소재학		공학사
		벤처창업학		경영학사
		글로벌패션비즈니스학		경영학사
		과학기술·행정융복합		과학기술·행정융복합학사
		AI·전기융합		공학사
		AI·전자융합		공학사
		드론·철도·건설AI융합 한류콘텐츠SW융합 디지털커머스AI융합		공학사
융합전공				공학사
0 8 6 0				공학사
		AI융합신소재디자인		공학사
		스마트농산업AI융합		공학사
		호스피탈리티SW		공학사
		디자인컴퓨테이션		공학사
		실내건축오토메이션AI융합		공학사
		패션AI융합		공학사

(별지 4) 폐지 <2015.3.25.>